

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2021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



■ 일 시 : 2021년 4월 16일(금) 오후 2시

■ 장 소 : 메디슨타워 B210호(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)

■ 참석자 : 재적 28명 중 17명 참석

(참석 : 정성규 회장, 윤상형, 김선구, 박원, 오영희 부회장, 곽근배, 김종필, 박준상, 오현석, 신문철, 서계현, 유경석, 이규수, 이선덕, 이재호, 주관우, 최재욱 이사)

■ 의 안

제1호 의안 기본재산의 유지관리건

제2호 의안 정관변경에 관한건

제3호 의안 임원임면에 관한사항

제4호 의안 임시총회 개최방법

■ 성원보고

사 무 국 장 : 임원 총28명 중 참석 17명의 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.

회 장 : 2021년 제2차 정기 이사회의 개최를 선언하다.

■ 회장인사

회 장 :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인사를 갈음하다.

■ 전차회의록 처리

회 장 : 전차회의록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다.

사 무 국 장 : 회의자료를 통해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.

회 장 : 전차회의록에 대한 이의사항을 묻다.

김선구 이사 : 이의 없으며, 원안대로 처리되길 말하다.

전 원 : 재청하다.

회 장 : 동의와 재청으로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,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가결하다. (의사봉 세 번 타봉)

■ 부의 안건 상정

회 장 : 2021년 제2차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기본재산의 유지관리건, 정관변경에 관한 건, 임원임면에 관한사항, 임시총회 개최방법 안건을 상정하다.

■ 부의안 심의

○ 제 1호 의안 : 기본재산의 유지관리건

회 장 : 의결주문을 언급하며,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게 하다.

사 무 국 장 : 기본재산의 유지관리 건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다.

회 장 :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.

전 원 : 동의하다.

김선구 이사 : 기본재산 부중금 5,000,000원은 예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의견을 내다.

윤상형 이사 : 동의하다

전 원 : 재청하다.

회 장 : 본 안건은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처리하다.

(의사봉 세 번 타봉)

○ 제 2호 의안 :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건

회 장 : 의결주문을 언급하며,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게 하다.

사 무 국 장 :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다.

변경전의 정관조문	변경후의 정관 조문	변경사유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용인시 내에 둔다.	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메디슨타워 B209호, B210호 이다.	<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> 주된 사무소를 도로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
제18조(임원의 선임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(생략) ⑤ (생략) ⑥ 선임된 임원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18조(임원의 선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~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⑥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, 사회복지법인 등기에 등재하여야 한다.	경기도 법인지원팀 지도점 검 사 지적사항
제26조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~4. (생략) 5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6~9. (생략)	제26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~4. (현행과 같음) 5.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6~9. (현행과 같음)	<공익법인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> 이사회의 기능중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이 심의결정 되어야 한다. (임원의 임면의 관한 사항)
제33조(이사회의결사항) 이사회는	제33조(이사회의결사항) 이사회는	<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

<p>다음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 1~6. (생략) 7. 사회복지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8~9. (생략)</p>	<p>다음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 1~6. (현행과 같음) 7. (삭제) 8~9. (현행과 같음)</p>	<p>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> 사회복지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.</p>
<p>제35조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) ① (생략)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 제37조(의결권대리행사)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수 있다.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 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 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.단체의 임직원 이여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.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</p>	<p>제35조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삭제</p> <p>제37조 (의결권 대리행사)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</p>	<p><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> 별도내용이 없음</p> <p><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(보건복지부지침) p26.>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할수 없고, 대리하여 행사할수 없음</p>
<p>제42조(사회복지연구소) ① 이 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이 회의 부설 사회복지연구소를 둘 수 있다. ② 사회복지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/p>	<p>제42조(사회복지연구소) ① 삭제 ② 삭제</p>	<p><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> 사회복지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.</p>
<p>제43조 (자산의 구분)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</p>	<p>제43조 (자산의 구분) ①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 1. 별표 제1의 목록의 재산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</p>	<p><공익법인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></p>
<p>제46조(회계의 구분 등)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 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</p>	<p>제46조(회계의 구분 등)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</p>	<p><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 규칙> 회계의 구분은 법인회계, 시설회계,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란 구분은 없</p>

<p>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.</p>	<p>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.</p>	<p>음</p>
<p>제49조(사업계획 및 예산) 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</p>	<p>제49조(사업계획 및 예산) 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</p>	<p><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(보건복지부지침) ></p>
<p>신 설</p>	<p>제3장 임원 제21조의2(임원의 해임) ① 이 회의는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. ② 이 회의는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 있다. 1. 법령,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할 때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. 직무태만,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때 4.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</p>	<p><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(보건복지부지침) >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누락</p>

(표1)(신설 2021.4.27.)

기본재산의 목록(제43조 제2항 제1호 관련)

1. 정기에탁금 : 5,000,000원

회 장 :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.
 김선구 이사 : 이의 없으며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다..
 전 원 : 재청하다.
 회 장 : 본 안건은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처리하다.
 (의사봉 세 번 타봉)

○ 제 3호 의안 : 임원임면에 관한사항

회 장 : 의결주문을 언급하며,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게 하다.

사 무 국 장 : 임원임면에 관한사항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다.

사임이사 : 이진완 이사, 서동호 이사, 황선인 이사

선임이사 : 박재희 이사, 김양희 이사, 심효순 이사(2021년 4월 16일 ~ 2024년 4월 15일)

회 장 :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.

곽근배 이사 : 동의하다

전 원 : 재청하다.

회 장 : 본 안건은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처리하다.

(의사봉 세 번 타봉)

○ 제 4호 의안 : 임시총회 개최방법

회 장 : 의결주문을 언급하며,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게 하다.

사 무 국 장 : 임시총회 개최방법에 관한사항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다.

개최 방법 : 서면결의

일시 : 2021년 4월 27일 (화) 10시~17시

장소 : 협의회 사무실 (메디슨타워)

회 장 :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.

김선구 이사 : 개최방법에 대해 안건에 동의하다.

오영희 이사 : 재청하다.

전 원 : 재청하다.

회 장 : 본 안건은 동의와 재청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처리하다.

(의사봉 세 번 타봉)

■ 보고사항

○ 기타보고

회 장 :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하게 하다.

사 무 국 장 : 6개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였음을 말하다.

회 장 : 보고사항에 대해 의견 및 질의사항을 묻다. 없으신 관계로 기타보고를 마친다.

■ 정기보고

회 장 :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하게 하다.

사 무 국 장 :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다.

- 1)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- 2) 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
- 3) 임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

회 장 : 보고사항에 대해 의견 및 질의사항을 묻다. 없으신 관계로 정기보고를 마친다.

■ 폐회

회 장 : 금일 안건은 모두 의결되었으며,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신 이사님들의 의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폐회를 선언한다. (의사봉 세 번 타봉)

○ 회의종료시간 : 15:00

본 사회복지법인은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2021년 제2차 정기이사회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한다.

사회복지법인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



회 장 정성규



이 사 곽근배



이 사 유경석



부회장 윤상형



이 사 김종필



이 사 이규수



부회장 김선구



이 사 박준상



이 사 이선덕



부회장 박 원



이 사 서계현



이 사 이재호



부회장 오영희



이 사 오현석



이 사 주관우



이 사 신문철



이 사 최재옥



확인 사무국장 김봉주



기록 팀 장 이수민

